

'95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

의안 번호	179
----------	-----

발의년월일 : 1996년 7월 30일

발 의 자 : 이찬희의원외 3명

1. 주 문

'95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기간 결정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95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을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에 따라 선임하므로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결산 검사기간 : 1996년 8월 12일 ~ 1996년 8월 31일 (20일간)

○ 결산 검사위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 (전) 직 위	비 고
장석천	'38. 10. 27	남	파주시 의회의원	
박노철	'35. 4. 3	남	(전)부천시 재무국장	파주시장추천
권혁진	'42. 9. 29	남	농협 파주시 부지부장	"
전승영	'62. 3. 6	남	새동회계법인 회계사	공인회계사
조태형	'37. 10. 3	남	신원회계법인 대표사원	"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 파주시 결산 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2)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3)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4)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감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 7.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 7. 6.>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7조(결산검사사항) ①감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평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